

사전투표

1. 사전투표제도

- 사전투표란 선거인(거소·선상투표자 제외)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 동안에 읍·면·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- 2013년도 상반기 재·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되었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.
- 사전투표가 도입된 후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 투표편의가 향상되었습니다.

2. 통합선거인명부

- 통합선거인명부는 구·시·군선관위가 구·시·군의 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중앙선관위가 하나로 통합하여 만든 명부입니다.
- 선거인이 별도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전투표기간 중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.
- 통합선거인명부는 폐쇄망인 사전투표통신망을 사용하고 통신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전용 폐쇄망으로 구성된 사전투표무선통신망을 보조 통신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

- 선거인이 사전투표에 참여하면 통합선거인명부에 투표 사실이 기록되고, 사전투표자의 신분증 이미지 일부를 저장(선거일 후 30일이 지난 후 지체없이 삭제)하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투표할 수 없습니다.

■ 사전투표운영장비 구성 ■



본인확인기



명부단말기



투표용지발급기



보관가방



무정전전원장치(UPS)



유·무선통신장비

3. 사전투표용지

- 인쇄소에서 미리 인쇄하는 선거일 투표용지와 달리, 사전투표용지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발급기를 통해 현장에서 출력하여 선거인에게 교부합니다.
- 투표개시 전과 투표마감 후에는 명부단말기와 투표용지 발급기는 봉인되어 있어서 투표용지를 임의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.